

군산시 공고 제2026-320호

「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,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3일



군 산 시 장

「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 -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매점 규모에 관한 제한 규정 삭제(2013.10.30.)

2. 주요내용

- 제2조(적용의 범위) 제2항 「매점의 경우에는 15㎡이하인 시설로 한정 한다」는 조항 삭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적용의 범위)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㎡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| 제5조(적용의 범위)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2. 3. ~ 2. 25. [22일간]

5. 의견제출

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경로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(1) (54078) 군산시 시청로 17 (군산시청, 경로장애인과)
- (2) 전화 : (063)454-3172

(3) 팩스 : (063)454-6025

(4) 전자우편 : airi0418@korea.kr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2.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
신구문 대비표 1부.

#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○ 성 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| 조례(규칙)안<br>내용 | 찬성여부 |   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   | 찬성   | 반대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|     |

##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“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㎡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”를 “**따른다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(생 략)</p> <p>② 공공시설내 매점및 자동판 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<u>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㎡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.</u></p> |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공공시설내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따른다.</p> |